

#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 
번호 1786

제출년월일 : 2008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안이유

-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·관리·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,
- 관련 실과 협의는 물론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 의견수렴을 마치고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 5조 1항 및 8조 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계획의 개요

- 계획범위
  - 공간적 범위 : 안산시 전역(147.14km<sup>2</sup>)
  - 시간적 범위 : 기준년도(2007년), 목표연도(2020년)

### 나. 주요 보고내용

- 계획의 수립배경 및 우수선진 사례
- 계획의 위상
- 기본구상(공원녹지 현안, 기본방향, 공원녹지 미래상, 지표설정)
- 기본계획(축과 망의 설정, 공원/녹지/녹화 기본계획)
- 계획의 종합(종합계획도)
- 향후 추진계획
- 세부 변경내용 → 『공원녹지기본계획(안)』 책자 참고

## **다. 법적 근거 및 수립기준**

- 법적근거
 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  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- 계획수립 기준
  -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(건설교통부, 2006. 12)

## **3. 검토의견**

- 자연,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계획으로서 시의 물적·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·사회·경제·역사·문화 등의 측면을 포괄하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·보전·관리·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## **4. 관계법령 및 첨부내용**

-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  - 제8조(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)
    -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50조의 규정에 의한 시·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·군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첨부자료 :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(안) 보고서 1부 끝.

## 안산시의회 의견서

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.

-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 · 관리 ·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안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시 안산시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목표수준을 정하고,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공원녹지의 공간계획 및 이용계획을 위해 공원이용자 패턴 및 프로그램 부족 부분에 대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여가 생활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,
- 시화호 간척지 내 조류습지공원은 안산시 대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특화하고, 대부도 황금산 토취장 공원화 계획은 지속적으로 대부도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 후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시기 바라며, 사동근린공원은 학교용지 및 체육시설부지 확보에도 노력하시기 바람.
- 또한 공원계획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(구봉지구, 흥성지구) 예방을 위하여 개발기간을 최소화하고, 공원의 확충보다는 서비스 등 만족도를 높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.